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제70호

2019. 6. 20.

건 명	논산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(마을자치분권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9. 6. 13.
소 관 위 원 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9. 6. 13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 논산시 마을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행정의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

-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(안 제6조~제7조)
-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및 사업신청(안 제9조~제10조)

나.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

- 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(안 제15조~제16조)
- 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(안 제17조), 지도·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등 (안 제18조~제19조)

□ 검토의견

○ 논산시 마을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향상 및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,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제46조, 제48조, 제50조, 제54조,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법률」제3조, 제16조, 제25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